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 1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 정계선 ·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 례

1. 심사 의안 ····· 1

2. 심사 일정 ····· 1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 2

가. 구성 경위 ····· 2

나. 활동 경과 ····· 2

다. 회의 경과 ····· 3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 5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 7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 7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 8

가. 위원장 인사 요지 ····· 8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한창) 모두(冒頭)발언 요지 ····· 9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 13

5. 종합의견 ····· 27

6. 참고자료 ····· 31

[참고자료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 32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 33

[참고자료 3, 별첨]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한창) 서면질의 답변서 ····· 40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2024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1. 심사 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2. 심사 일정

가. 선출안 제출: 2024. 12. 9.

나. 선출안 회부: 2024. 12. 10.

다.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 2024. 12. 18.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라. 인사청문

○ 2024. 12. 24.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마. 경과보고서 채택

○ 2024. 12. 24.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가. 구성 경위

○ 2024. 12. 9.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4. 12. 10. 동 선출안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됨.

○ 같은 달 11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통보가 있었음.

- 더불어민주당 소속(7인): 김기표, 김남희,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이용우 위원
- 국민의힘 소속(5인): 곽규택,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정점식 위원
- 비교섭단체(1인): 김종민 위원

○ 같은 달 18일, 의장으로부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개선 통보가 있었음.

- 사임: 이용우 위원(더불어민주당), 보임: 박지원 위원(더불어민주당)

○ 같은 달 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이 있었음.

- 위원장: 박지원 위원(더불어민주당)
- 간 사: 김한규 위원(더불어민주당)

나. 활동 경과

○ 활동기간: 2024. 12. 9. ~ 12. 24. (16일 간)

○ 위원회 구성 및 인사청문회 준비: 2024. 12. 9. ~ 12. 17. (9일 간)

○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18.)

- 위원장 선임의 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처리

○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23.)

-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 12. 24.)

-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다. 회의 경과

○ 202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차에 걸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회됨.

○ 2024년 12월 17일 김한규 위원 등 8인으로부터 개회 요구서가 접수됨. 2024년 12월 18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및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하였음.

○ 2024년 12월 24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한창)의 인사청문회 선서와 모두발언이 있은 후 위원들의 주질의(위원별 7분), 보충질의(위원별 5분), 재보충질의(위원별 3분) 및 공직후보자의 답변 등이 있었음.

○ 2024년 12월 24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계선) 선출안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함.

인 사 청 문 특 별 위 원 회 회 의 경 과

일 시	관련 안건	비 고
<제1차> 2024.12.18.(수)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5.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 국회 제5회의장 (본관 220호)
<제2차> 2024.12.23.(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 국회 제3회의장 (본관 245호)
<제3차> 2024.12.24.(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장소 :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본관 319호)

라. 자료제출 요구 및 접수

(1) 교섭단체별 요구 현황

합 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무소속)
499건	435건	-	64건

(2) 대상기관별 요구·접수 현황

(단위: 건)

연번	기 관	요 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비고
1	감사원	6	5		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1		
3	경찰청	23	10	13		
4	고용노동부	6	6			
5	공무원연금공단	7	6	1		
6	관세청	11	3	8		
7	교육부	36	22	8	6	
8	국가인권위원회	2	2			
9	국가정보원	1		1		
10	국무조정실	2	2			
11	국민건강보험공단	12	12	10	2	
12	국민권익위원회	4	4			
13	국민연금공단	5	5			
14	국방부	20(9)	8		1	
15	국세청	36	34	2		
16	국토교통부	29		2	27	
17	근로복지공단	4(3)	3			
18	금융감독원	8(7)	6	1		
19	농림축산식품부	6	5		1	
20	대법원	91	91			
21	대통령비서실	1		1		

연번	기 관	요 구	제출	미제출	부분제출	비고
22	대한적십자사	4	2		2	
23	문화체육관광부	2				
24	법무부(검찰청 포함)	22	9	13		
25	병무청	11(24)	20	2	2	
26	보건복지부	3(2)	2			
27	외교부	7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5			
29	한국고용정보원	0(1)	1			
30	한국연구재단	1	1			
31	한국은행	4(5)		2	3	
32	행정안전부	12	11	1		
33	헌법재판소	118	115	2	1	
합 계		**499 (501)**	**390**	**75**	**46**	

마. 서면질의서 및 답변서 제출

(1) 서면질의서 제출

○ 서면질의 총 349건

교섭단체	위원명	서면질의 건수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
	△ 김한규	43
	김기표	68
	김남희	39
	민병덕	66
	박주민	81
	박희승	50
국민의힘	곽규택	-
	김기웅	-
	김대식	-
	박성훈	-
	정점식	-
비교섭단체(무소속)	김종민	22
합 계		369

○: 위원장, △: 간사 위원

(2)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한창) 서면질의 답변서: [별첨]

바. 구두질의요지서 제출

교섭단체	위 원 명
더불어민주당(2인)	김한규, 박주민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위원장 인사 요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기관임.

○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헌법재판관은 국가 헌법질서 수호 의지와 법률적 지식 및 역량 등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야 함.

○ 위원님들께서는 조한창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엄정히 검증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후보자 또한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람.

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한창) 모두(冒頭)발언 요지

○ 저는 1965년 경기도 수원에서 공무원이신 아버님과 가정주부이신 어머님 슬하 4남매의 둘째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님의 영향으로 다소 소극적이고 규범을 잘 지키는 아이로 자랐음.

○ 1983년 대학교에 입학한 후 법학을 처음 접하면서 '정의'라는 단어가 저의 관심을 차지하게 되었음. 그래서 존 롤스의 '정의론'을 번역한 '사회정의론'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하여 졸업을 위한 에세이에 갈음하기도 하였음.

○ 그 후 저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2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29년 동안 민사, 형사, 행정 등 여러 분야의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근무하였음. 한 차례의 지원장과 두 차례의 수석부장 보직을 거치면서 사법행정업무도 수행하였음.

○ 저의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사명감,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성품이나 성격이 형성된 과정은 시기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음. 그 첫째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배석판사 시절, 둘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셋째는 비로소 독자적으로 재판을 하기 시작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임.

○ 저는 법원에 처음 임용된 뒤 훌륭한 법조 선배님을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음. 배석판사 시절은 법관으로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게 배려하고 공감하는 자세, 법관으로서의 엄중한 소명의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기였음.

○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에는 대법관님을 보좌하여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사건을 검토하면서 법률지식을 축척하고, 대법관님으로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적 약자인 당사자의 입장을 좀 더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배웠음. 그 당시 습득한 법률지식과 당사자를 배려하는 자세는 그 이후 제가 법원에서 큰 무리 없이 한 명의 독립된 법관으로서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밑거름이 되었음.

○ 제가 법관으로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었던 시기에 저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재판받을 권리를 위하여 법관이 갖추어야 하는 자세나 태도에 관하여 고민하였음.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언행을 삼간다는 신독(愼獨)과 함께 배려와 공감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동시에 법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등 법관으로서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음.

○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정신은 국민주권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함께, 법에 의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주의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함. 또한 저는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의 존재의의와 기본권의 최고원리로 생각하고, 재판과정에서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2021년 법관을 사직한 후 약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과 고통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음. 변호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제 양심에 비추어 수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은 일체 수임하지 않았으며, 과거의 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하여 이른바 전관예우 등의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음.

○ 저는 지난 33년간 법관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음. 특히 법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다수의 결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지키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하고, 국민의 기본권

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보루로 자리 잡았음.

○ 우리 사회는 최근 들어 세대·지역·성별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관계 문제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 게다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음.

○ 인사청문회를 거쳐 저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음.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음.

○ 저는 오늘 이 청문회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가 살아온 인생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함.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깊이 새기겠음.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요지

1)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신과 자질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사법농단 연루 사건 관련,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여졌거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가치에 누를 끼쳤다면 송구하다고 한 것이 맞는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판결 방향을 제시하고, 서기호 판사 사건에서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담당 법관에게 전달한 바 있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및 후보자의 증언과 검찰 조사 기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임. 이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	○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재판 관여 행위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점이 사법부 독립과 신뢰에 누를 끼친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해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림.
○ 실제로는 재판관여행위가 아닌데 외형이 그렇다는 이야기인지?	○ 서면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처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받은 후 전달하기 적절하지 않아 문서를 즉시 파쇄하였으며, 구두로 전달했다는 것은 해당 사건의 경우 법률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신중히 검토를 바란다는 취지였음.
○ 검찰 조서에서의 발언 내용을 보면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았겠으나 그러	○ 당시 문건을 전달받을 때 처음부터 거절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

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 맞는지? 이는 곧이곧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인지? 이에 대하여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았을 것이란 것에 동의함.
○ 신영철 전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시절 촛불집회 재판에 관여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당시 촛불집회 관련 재판 11건 중 8건이 후보자에게 배당되었는데, 부탁을 받았는지, 왜 혼자만 관련 사건을 많이 배당받았다고 생각하는지?	○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당시 다른 재판부에 비해 제가 맡은 사건이 적어 많이 배당된 것으로 추측함.
○ 후보자는 배당받은 촛불집회 재판들을 매우 빠르게 처리했으며, 이후 본인이 적용한 법률 규정들이 위헌 결정이 났는데, 위헌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는지?	○ 개개의 사건마다 심리를 충실히 하고 증거조사 후 결론을 냈으며 위헌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함.
○ 사법농단 당시에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제 행동에 대해 우려를 하시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나, 제가 부당한 지시에 맞춰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님.
○ 소위 부정선거론에 동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불필요한 음모론에 단호히 대응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음. 후보자도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	○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각함.	
○ 헌법재판관의 능력과 자질은 무엇인가?	○ 자유민주적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관과 법조인으로서 투철한 신념, 균형 잡힌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함.
○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헌법관을 가지고 있는지?	○ 확고한 헌법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적임자로 추천하였는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청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함.	○ 국회 사정으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여당과 야당 사이에 국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청문회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인지?	○ 추천은 국민의힘에서 했지만, 국회에서 선출하는 후보자의 지위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음.
○ 판사 생활을 하면서 후보자의 인품과 실력 및 청렴성을 잘 알고 있는데, 대법관 후보자로도 추천된 적이 있었는지?	○ 세 번 추천을 받았음.
○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면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역사적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봄.

2) 헌법재판소의 구성·역할 및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 재판관 구성은 진보 2명, 중도보수 1명, 보수 5명이었으나,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렸는바 헌법재판관의 개인적 이념 성향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당연하다고 생각함.
○ 정치 양극화가 헌법재판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는 이념 성향이 달라도 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려는 노력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념 차이가 커지고 중재 노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시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 헌재 결정이 많아졌으면 함.	○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며,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말씀해주신 부분을 명심하여 실행하겠음.
○ 탄핵심판은 6명이 해야 하므로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 일단 규정상 재판관은 7명 이상이어야 하고 가처분을 통해 6명이 심리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 합당하다고 생각하므로, 일각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함.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탄핵사건에서 국회에 유리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 동의하지 않음.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의 선출 방식은 다수결의 방식이 아닌지?	○ 해석상 그렇게 볼 수 있음.
○ 국민이 시급히 요구하는 바는 헌재의 9인 체제를 조속히 구성하는 것임.	○ 말씀하신 시대적 흐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음.
○ 후보자는 스스로 보수로 평가하는지 진보로 평가하는지?	○ 스스로는 보수라고 특정하지 않으나 외부에서는 보수로 보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수라고 하더라도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3)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관한 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2.3. 비상계엄 및 관련 탄핵심판 사건>	
○ 최근 22대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일부 유튜버들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의 사유로 부정선거와 국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을 들고 있음. 이 중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하여 선관위 시스템이 엉터리라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에 여러 소송들이 제기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도 선관위에서 충분히 부정선거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 선거에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해도 된다고 보는지?	○ 계엄 자체는 요건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현직 판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도 체포대상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와 같이 판사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지?	○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국헌문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임.
○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그 절차와 요건 등이 개별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계엄의 경우 기본권침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엄법에 구체적인 절	○ 그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음.

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 12.3. 비상계엄의 경우 헌법·법률상의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는지?	○ 절차적 부분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전쟁과 국지전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전시·사변 등 계엄선포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으며, 일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비상계엄을 위해서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실질적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 전쟁상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문언상 나오는 사변도 없었으며,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여 답변이 어려움.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국가기관에 위해를 가하는 일은 하면 안된다고 답변하셨는데, 계엄 선포시에도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국회는 해제 권한이 있음을 알고 있는지?	○ 그에 대하여 알고 있음.
○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사유로 거대 야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들었으나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으며, 계엄은 예방적 조치로 사용할 수 없고,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계	○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엄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법률상 탄핵심판은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성 때문임.
○ 사안이 엄중하여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헌법재판관이 되시면 이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당부드림.	○ 신속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음.
○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5.18 내란 불기소 사건에서 나온 말인데, 서울의 봄 영화에서 나온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말에 동의하는지?	○ 동의하지 않음.
○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판례에 동의하는지?	○ 대법원 판례를 동의하고 존중함.
○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무력으로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의원이나 보좌관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와 같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바가 없는데, 이는 위헌적 행위인지?	○ 화면을 통해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보았으며, 헌법 규정상 없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하신다면 이는 위헌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
○ 계엄 해제를 요구하려는 국회에 병력이 투입되고 본청으로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특전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 모의 내용에 사살, 수거 등의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하였고, 방첩사는 체포대상을 불러주었으며, 정보사는 선거관리위원들을 납치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대기했다고 함. 경찰본부장은 수첩에 국회 봉쇄 및 정치인·노조 등이 “수거” 대상으로 표시되었으며 "수거"는 체포로 해석된다고 밝혔음.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이러한 모의 내용이 합헌적이라고 보는지?	
○ 국민의 기본권 중 생명권은 침해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으며, 이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사유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 형법상의 사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함.
○ 만약 북한을 의도적으로 군사적으로 도발하여 이를 계기로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면, 이는 외환죄에 해당하는지?	○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만약 실제로 군사적으로 침공을 하려고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윤석열의 두 차례 담화는 병력 투입이나 국회 마비 시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고, 비상계엄을 보다 강경하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내용도 담겨 있음.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유념하겠음.
○ 계엄은 4·19 혁명을 막기 위해, 5·16	○ 계엄 발동의 역사를 알고 있으며, 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기 위해, 부마 민주 항쟁을 억압하기 위해, 전두환의 군부 장악을 위해 선포되었으며, 한국 현대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억압을 위해 이루어졌음.	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알고 있음.
○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계엄이나, 전두환과 노태우 신군부가 주도한 12·12 군사쿠데타가 위법행위라고 보는지?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동의함.
<내란죄 관련>	
○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내란죄와 외환죄를 형사소추 사유로 규정한 것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이 내란죄 및 외환죄는 소추 가능하다고 한 취지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함.
○ 헌법 제87조 및 형법 제91조에는 내란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라면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유념하겠음.
○ 찰스 1세는 의회 소집을 거부한 이유로 처형되었고, 비상계엄은 그의 행태와 유사하다고 봄. 허영 교수가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 당시 국왕의 권한에 맞서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며, 긴급권과 반란의 관계는 긴급권이 합법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허영 교수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함.
○ 탄핵심판의 쟁점을 정리해보면, 피소	○ 내란죄가 성립되면 그러할 것으로 보

추자가 '중대성'에 대해 항변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죄가 성립하면 중대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임.
○ 내란죄의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며, 1997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헌법기관의 활동을 금지한 것으로, 폭동은 최광의의 폭력으로 해석했는데, 이번 비상계엄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봉쇄 및 침입한 행위는 내란죄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부분이 말씀드린 행위만으로 성립될지는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으며, 만약 포고령 1호가 증거가 된다면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은 있음.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리를 할 때 내란죄 성립 여부가 반드시 판단되어야 하는지?	○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심리 과정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대한민국을 주술 국가에서 구하는 길은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내란·외환의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수사기관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함.
○ 만약 군대나 경찰에 의해 헌법재판소로 출근할 수가 없어 심리할 수 없다면, 이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 이론적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 등 관련>	
○ 앞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던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	○ 헌법 규정에 따르면 9명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고 규

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 이에 대해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음.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긴 하나 이는 명확한 부분이라고 보며,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는 것은 궤변이라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보는지?	○ 임명하는 것이 헌법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함.
○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헌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	○ 그렇다고 생각하나,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는 이견이 있고 검토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국회가 다수결로 선출해야 하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여야의 만장일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으로 요건을 추가한 것임.	○ 유념하겠음.
○ 윤석열 대통령도 100%로 당선되지 않았고, 한덕수 총리도 국회 인준을 받을 때 250석 재석위원 중 208표를 받았는데, 한덕수 총리의 말대로라면 100%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됨.	○ 유념하겠음.
○ 지금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가장 중	○ 정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재판관을

요한 헌법기관으로, 재판관 3인의 신속한 임명이 이루어져 9인 체제에서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며, 임명을 지연시키고 다른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지?	임명하지 않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임.
○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시절의 사유를 이유로 탄핵하기 위해서는 151석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그러한 해석이 맞다고 봄.
<특검법 관련>	
○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며 야당의 특검 후보 추천이 위헌적이라고 발언했으나, 윤석열 씨도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구성된 박영수 특검 체제 하의 수사팀장이었음을 감안할 때, 갑자기 야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 그에 따라 판단할 필요 있다고 생각함.
○ 야당만의 최순실 특검 추천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것은 알고 있는지?	○ 그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야당의 추천만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국회의 입법정책으로 본 것임.
○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과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 장치 등을	○ 그렇게 알고 있음.

고려할 때,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 두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입법 재량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맞는지?	
○ 이번 내란특검에서 야당만의 추천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에 따른 기준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함.
○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이 위헌이라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거부권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내란특검의 대상에 한덕수 본인이 해당함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지?	○ 거부권 행사 당사자인 권한대행의 생각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관련>	
○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의 내재적 한계에 동의하는지?	○ 헌법정신에 비추어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함.
○ 법률안거부권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제정된 법률이 헌법에 반하거나 정책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함.
○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재적 한계에 동의하는지?	○ 거부권 행사의 공정성을 위해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5. 종합의견

○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3시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 조한창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였음.

○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한창) 인사청문회에서는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에 대하여 ①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및 부속서류, ②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답변자료, ③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④ 인사청문회에서의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을 토대로,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각종 헌법적 쟁점 및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후보자의 개인 신상 및 도덕성 등의 측면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등을 검증함.

○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후보자가 최근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 등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일부 청문위원의 우려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및 자질과 식견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음.

① 후보자는 1992년 법관 임용 후 29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업무를 두루 경험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및 지원장과 수석부장을 역임하는 등 법관으로서의 높은 전문성과 함께 사법행정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점

② 사법농단 논란에 관여되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당시 문건을 전달받은 즉시 거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재판관여행위로 받아들여져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에 누를 끼친 과오를 사과하고 있는 점

③ 12. 3. 비상계엄 당시 현직 판사 및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체포대상이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고,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점

④ 국회가 선출하는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고,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 체제를 완성하여 심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

⑤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의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회의 의사결정은 헌법에 근거한 다수결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답변하였고, 국무총리 직무를 사유로 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과반수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⑥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명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점

⑦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관을 갖추고 있음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였고, 지난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방지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헌적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에 대하여 결과적인 오류를 인정한 점

⑧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심사숙고하

며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국민주권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구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6.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참고자료 2〕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별첨: 참고자료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한창) 서면질의 답변서

〔참고자료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명단

<위원명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명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간 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위 원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김남희, 민병덕, 박주민, 박희승
	국민의힘	곽규택,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정점식
	비교섭단체 (무소속)	김종민

<직원명단>

직 위	직 원 명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박동찬, 이화실
입법조사관	김세현, 박지영, 유항재, 모주영, 이정미, 정수정, 최준호, 이혜미, 문정호, 소만경, 김태현, 박은정, 최한슬, 박진영, 이상민, 김홍규, 최용구, 이강욱
행정실장	정진욱
행정관	임채현, 김기연
주무관	김민옥, 박옥서, 김수자, 임현숙, 이미숙, 이지영
과 장	유규영
주무관 및 법제관보	장윤명, 임희경, 차인창

〔참고자료 2〕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 정계선 · 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2024. 12.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1. 목　　적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함

2. 안　　건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인사청문회

3. 인사청문회 실시일

2024. 12. 23.(월) 10:00 마은혁 후보자

2024. 12. 23.(월) 14:00 정계선 후보자

2024. 12. 24.(화) 10:00 조한창 후보자

※ 붙임 1: 의사일정(안)

4. 장　　소

국회 제3회의장(본관 245호)

5. 운영방침

가.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 모두발언 청취, 질의·답변, 증인·참고인 신문, 보충질의·답변, 후보자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한다.

나. 인사청문회의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라.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 중 신문순서 및 위원별 신문시간 등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마. 위원이 질의 중 시청각 자료(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사청문회법」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공직후보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국회관계법규에 따라 진행하되,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6.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7. 소요경비

증인 여비 등 소요경비는 국회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8. 행정사항

가. 인사청문회 개회공고

o 인사청문회 개회공고는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국회전자게시판에 「붙임 2-1~3」과 같이 공고한다.

나. 언론관계

o 인사청문회의 중계방송 및 방송기기의 설치는 인사청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허가한다.

다. 인사청문회 방청

o 일반방청은 위원의 소개가 있어야 하며, 위원장이 방청석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붙임 1]

의 사 일 정

일 시	안 건	비 고
<제1차> 2024.12.18.(수) 10:00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4.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5.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6.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7.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장소 : 국회 제5회의장 (본관 220호)
<제2차> 2024.12.23.(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헌법재판소 재판관(정계선)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장소 : 국회 제3회의장 (본관 245호)
<제3차> 2024.12.24.(화) 10:00	1.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 안건, 회의일시, 회의장소는 위원장 및 간사 간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2-3]

공 고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개회합니다.

1. 안 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2. 일 시 : 2024. 12. 24.(화) 10:00

3. 장 소 :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본관 319호)

2024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참고자료 3〕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조한창)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

2024. 12.

공 직 후 보 자(조 한 창)

목 차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47

김남희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16

민병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158

박주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231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20

김종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 380

김한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라고 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폐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라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계엄군을 진입시킨 것은 형법제87조 상 '폭동'에 해당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 다수의견은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결합은 어느 정도 조직화될 필요는 있으나, 그 수효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내란되는 폭동행위로서의 집단행동이 개시된 후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수로 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폭동행위로 말미암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라야 기수로 된다고 할 것이고,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최광의의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 다만, 이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고(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형법 제87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인 동시에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기수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이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재판관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상설특검이 추천 및 임명된다면 해당 심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위헌 적인 것으로 결정날 경우 특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의 각 가결·선포행위 등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라7)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내란죄의 정범들이 국헌문란 목적의 달성을 위해 계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내란죄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내란죄의 종료시기를 1987. 6. 29.로 본 원심의 판단이 부적절하고, 내란죄는 상태범으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이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재판관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4년 12월 3일 22시 기준, 대한민국은 헌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무회의의 심의 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부서한 문서가 없는 경우, 해당 국무회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만일 2024. 12. 3.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부서한 문서가 없을 경우, 해당 국무회의의 효력에 대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련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12. 비상계엄 선포 시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시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13. 비상계엄 선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방식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 선포 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는 방식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14.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의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명령 할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 구금(拘禁) · 압수 · 수색 · 거주 · 이전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본업복귀명령이 계엄법 제9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고, 또한 해석·포섭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15. 비상계엄 선포 시 의료인을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계엄법 상 '동원 또는 징발'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계엄법 제9조 제2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징발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이나 물자를 강제로 모으거나 거둠."이고, 징발법은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를 징발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원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 따위의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의 편제를 평시 편제에서 전시 편제로 옮기는 일"이고, 병역법은 제44조에서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대의 동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인에 대한 본업복귀명령이 계엄법 등이 정한 '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고, 또한 해석·포섭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

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16. 비상계엄 선포 시 계엄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시킬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쟁점이 되는 다수의 헌법재판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입니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비상계엄 선포 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먼저 문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쟁점이 되는 헌법재판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입니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비상계엄 해제 이후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표결 이전 자신의 경호인력을 대동하고 국회를 방문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국회에 대한 폭력 혹은 위협 행위로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의 국회 방문일정이 취소되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대통령 경호처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헌법상 규정도니 영장제도를 침탈하는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제1항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1조는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제111조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압수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게 방해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또한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것이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헌법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

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20. 내란죄는 언제 종료된다과 생각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대법원은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내란죄의 종료시기를 1987. 6. 29.로 본 원심의 판단이 부적절하고, 내란죄는 상태범으로서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포함한 일련의 내란행위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4.에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이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재판관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내란죄의 기수가 인정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의 내란죄와 외환죄에 관하여는 불소추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로 기소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이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는 헌법재판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재판관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에 의한 직무정지 없이 특정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고 한다면 이는 합헌적 행위인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어 ‘허가 · 인가 ·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대한 개별적인 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정부조직법령에 따라 하급행정기관에 소관사무를 위임하는 것까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취지에 비추어 모든 권한에 대하여 무조건적이고 포괄적인 위임까지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고, 위임에 일정한 한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 대통령이 자의에 의해 2선 후퇴를 밝힌다면 이를 뒷받침할 헌법적 근거가 있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2선 후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헌법 상 '사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제71조의 '사고'를 ① 대통령이 존위하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②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 헌법 상 '궐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궐위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 자리'이고,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제71조의 '궐위'를 대통령이 ① 사망한 경우, ②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③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 사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2선 후퇴, 국정 위임은 헌법 상 '궐위' 나 '사고'에 해당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2선 후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탄핵심판 중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하여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8. 국민적 관심이 큰 탄핵심판의 심리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가?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판단근거는?

○ 헌법재판소법은 제38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른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심판에 대하여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적정한 심리기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9.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합니다.

○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대통령의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별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현상유지일 필요는 없지만 사고인 경우에는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권한대행의 범위가 일괄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권한대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같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 재판관 임명절차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같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및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적법 여부 내지 당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 대

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만약 이렇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재판관 6명 체제가 가동되는데. 후보자는 재판관 6명이서 헌재 사건의 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만약 적용된다고 판단하다면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하였습니다.

○ 일각에서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의 모두 동의하는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완전체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사건인 2024헌마900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고, 재판관 6명이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건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6명이서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가처분 결정으로 내린 결정인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이게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있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충실히 심리하여 내려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의 모두 동의하는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완전체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사건인 2024헌마900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고, 재판관 6명이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건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이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추천 및 임명돼서 들어오게 되면 이미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재판관들이 들어오면 되는 것인데. 초반에야 준비기일을 다시 하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판이 진행된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앞선 기일을 다시 다 갱신해야한다고 보는지?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탄핵심판 절차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301조 등 관련 규정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심리 중이거나 앞으로 심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손준성 건처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진다고 보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병행할 수도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하여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4.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한 매 재판을 공개 변론을 여는 것에 찬성하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변론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국가안전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탄핵심판에서의 공개 변론 여부는 위 조항들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35.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결정을 빨리 내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 이에 대해 한쪽에서는 혼란을 일축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형사 재판 사건이 나오기 전에 빨리 결론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헌재가 너무 사건을 일찍 규정해 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후보자 입장은 어떠한지?

○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였고(2016헌나1),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법은 제38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므로,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장기간 정지됨에 따른 불안정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탄핵심판에 대하여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되므로, 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에 그 재판결과를 기다릴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심리와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

제라고 생각합니다.

36. 정형식 재판관이 혼맥으로 얽혀있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사실상 방탄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후보자 입장은 어떠한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임명권 행사나 현재 재직 중인 재판관의 신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현재 국민의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결론이 나기 전에 상설특검이 추천 및 임명된다면 해당 심리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만약 위헌 적인 것으로 결정날 경우 특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는?

○ 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의 각 가결·선포행위 등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라7).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사회 일각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후보자는 이 같은 부정선거론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의 부정선거 경험으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선거무효 내지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정확히 어떤 권한등을 대리하는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하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는가?

- 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 대리하는 권한을 정확히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대통령의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별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현상유지일 필요는 없지만 사고인 경우에는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권한대행의 범위가 일괄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권한대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같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 재판관 임명절차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같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적법 여부 내지 당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39, 40항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대통령의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 할 수 있는가?

○ 39, 40항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의 성격과,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의 성격이 다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

○ 39항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뚜렷한 헌법관과 법조인으로서의 굳건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더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후보자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률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약 29년 간의 법관 및 약 4년 간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그 동안 축적한 재판경험, 전문성,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던 신념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와 이유는?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본분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헌·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천부적인 인권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의 제도가 없을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4.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은 개혁적인 의지와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정신, 공직자로서 항상 조심하는 마음가짐과 배려하는 정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법률가로서 존경하고 있습니다.

○ 해외 인물로는 윈스톤 처칠경(Sir 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을 존경합니다. 처칠경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력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여러 의견을 조화롭게 중재하는 능력,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추진력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의미있는 판결과 그 이유는?

○ 저는 모든 사건에서 법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결을 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기에 특별히 의미 있는 판결을 꼽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특별히 이목이 집중되는 판결을 많이 하였던 기억도 없습니다.

○ 후보자가 행정법원 재직 시,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폭발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에게 해외 출장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69171 판결). 해외 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후보자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치밀하게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외 파견자가 아닌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로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관해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유족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6. 후보자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가장 힘들었던 판결과 그 이유는?

○ 저는 모든 사건에서 법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결을 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기에 특별히 힘들었던 판결은 없습니다.

7. 법관 탄핵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함으로써 역할을 분담하는 탄핵제도는 '비상적 수단'으로서, 고위공직자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탄핵의 소추 여부는 국회의 소관사항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법관 탄핵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인적구성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고 하면서, 제1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법관 내지 변호사 자격 등을 반드시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판관 자격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나 개헌 사항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9.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노동법원 설치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노동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판단을 위하여 노동법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나,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재판부 구성 등 관련 쟁점들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수사기관과 변호인 등을 대면하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대법원이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쳐 범죄대응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수사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범죄대응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에 대해 과잉 발부라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 수사기관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영장 발부의 증가에는 범죄의 고도화 및 그에 따른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증대 등 다양한 맥락이 있을 수 있고, 후보자가 일률적으로 영장이 과잉 발부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전관예우 및 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 저의 오랜 법관으로서의 근무 경험과 짧은 변호사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항상 논란이 있어 왔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와 같이 믿고 우려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 현재 제도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 취업제한, 퇴직 전 최종 근무지에서의 사건 수임 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국선변호를 확대하며,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여 전관예우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4.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여(제247조)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검찰의 편파적 수사, 임의적 기소 및 불기소가 우려된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소권 행사의 주체 및 그 방식 등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5.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보다 많은 액수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억지하고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과도할 우려가 있고 소송이 남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도입에 있어 여러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입법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검찰의 부당한 압수수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검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강제수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를 알지 못하는 이상 부당한 압수수색 사례라는 지적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심각성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는 초기에는 경미한 수준이더라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2007년 출범한 이래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12.에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좀 더 사회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다만, 형벌을 부과하고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범죄를 야기하는 여러 사회적 조건들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노력을 함께 병행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18. 정부의 시행령 마련 시 상위법의 입법(개정)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7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은 상위법령인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

○ 원론적인 입장에서 입법취지는 법률문언과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와 함께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에는 모법의 위임 목적 및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9.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 다만,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므로 청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성범죄 법정형 상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피해자의 보호, 성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법정형의 상향이 성범죄의 예방 등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과잉처벌의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성범죄 처벌 수위는 법정형보다는 양형에 대한 문제라 생각하고,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형벌을 부과하고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범죄를 야기하는 여러 사회적 조건들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1. 조건부 구속 영장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전자장지 부착 등 조건을 달아 일단 석방하고 위 조건을 어기는 경우 구속하는 것과 같은 조건부 구속영장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무죄추정 원칙, 불구속 수사 원칙을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고 피의자의 범죄 혐의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례성 심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보석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석방 유무가 결정될 수 있고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병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신구속제도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라는 측면과, 범죄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병확보의 수단이라는 측면을 조화시키면서 법조계와 학계의 연구, 외국 입법례, 국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 여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2.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과 모욕죄 처벌 조항에 대하여 개정 내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물,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기각 5: 위헌 4)을 하였습니다(2017헌마1113 등).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판단한 바 있으며, 최근인 2022년 5월에도 6인의 재판관의 기각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2021헌바341).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3. 법왜곡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독일의 사례 등을 참조하여 법왜곡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 그 밖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법 사건을 주재하거나 결정함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왜곡죄의 도입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는 법왜곡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법률 문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왜곡죄의 도입 여부는 해외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포함하여 입법 의도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결정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4. 고위공직자의 청탁 물품 수령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공직자의 청탁 물품 수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금지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청탁 물품을 수령한 공직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제132조(알선수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법률규정이 아니더라도, 고위공직자가 공직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은 당연합니다.

25.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우리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행사 사유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남용될 경우 입법권이 침해되거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민주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6.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먼저 재판지연에 관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법관 등 사법부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판에 이용할 수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더 쉽고 빠르게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기술적 프로그램 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전문법원의 신설 및 전문법관의 확대 등 법관과 법원의 전문화 역시 필요합니다.

○ 근본적으로는, 법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관의 처우 개선과 사법부 내·외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7. 평생법관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평생법관제는 법관으로 한 번 임명되면 정년까지 평생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원로법관 제도, 전담법관제도 등 평생법관제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시행되어 정년퇴임 법관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법관제는 연륜과 경험이 많은 법관이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크고,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의 우려 역시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8. 법조계 기수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개선 방향은?

○ 법조계의 기수문화란 사법연수원 기수를 기준으로 보직과 직급이 정해지는 서열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면서 기수(로스쿨 입학년도)보다는 나이나 사회생활 경험 등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기수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9.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영향과 지시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직무상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 제도적으로는 재판관이나 법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30.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지 여부에 대해 오랜 기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2018년부터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소득 유형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는 점, 일반 급여소득자에 비해 소득세율이 낮고 필요경비의 상당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점에서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결국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와 종교활동의 공공성이라는 가치와 실질과세원칙이라는 조세법상 대원칙 사이의 비교형량의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는 사회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1. 현재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권 문제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인권 문제에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고, 또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어떠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2.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우리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고 하면서, 제1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법관 내지 변호사 자격 등을 반드시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판관 자격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나 개헌 사항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3.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23. 3. 23. 2022헌라4), 동 법률의 내용 중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에 대하여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1370 등).

○ 또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검찰청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헌재에서 결정한 사안 내지 현재 심리 및 중인 사건 및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부패, 공직자범죄 등 중요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수사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폐지 및 신설, 기소권 행사의 주체 등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 회복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여러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사법부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루이므로, 사법부는 신뢰를 다시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게 할 어떤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최근 재판 지연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사법부는 신속하고도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36. 존엄사 찬반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우리나라는 2009년 대법원 판결(2009다17417)을 통해 처음으로 존엄사가 허용된 이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조력사망(안락사)을 허용하는 ‘조력존엄사법’도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력존엄사의 도입은 결국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연명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입니다(2019헌마683).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및 평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공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중 우선시되야하는 것은?

○ 공적인물,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헌법재판소도 명예훼손 관련 실정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공적 인물과 사인, 공적 관심 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고,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헌재 2021. 3. 25. 2015헌바438등).

○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개별 사안에서 공적인물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권리의 관계를 숙고하고 사안에 따라 헌법적 가치를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8. 헌법재판관 자격요건 완화 및 확대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고 하면서, 제1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장기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법관 내지 변호사 자격 등을 반드시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재판관 자격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나 개헌 사항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9. 헌법재판관 퇴임 후 후보자가 생각하는 진로는?

○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하게 되는 때는 거의 만 67세가 되는 시기여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변호사활동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40. 법관의 개인 SNS를 통한 의견 개진에 관해 후보자의 생각은?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2년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정례회의에서 ‘법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내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되므로, SNS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한 사람인 동시에 독립과 공정이 요구되는 법관이기도 하므로, 재판의 독립이나 공정에 의심을 줄 수 있는 활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던 고민이 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또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헌법적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언론사건 전담 재판부에 3년간 근무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한 언론 보도에 있어서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도의 공익성을 존중하면서도 보도 대상자의 인격권과의 갈등에 관하여 균형 있고 상식적인 판결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무엇이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결론인가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자가 판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특별히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헌법적 사항이 있다고 생각해보진 못하였습니다.

42.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본인의 가치관이나 신념과 충돌하는 전통적 헌법 해석이 있는지?

○ 제 가치관이나 신념과 충돌한다고 생각되는 전통적 헌법 해석은 없습니다.

43.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관의 변호사 재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후보자 본인이 이른바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퇴직 후 변호사로 재직한 바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4. 법관 기피신청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 기피제도의 경우에는 우리 소송법상 기피사유가 추상적이어서 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기피신청 인용도 거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되는 경우 재판이 중단되고, 기피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한다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하여 기피권이 남용될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법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과 사법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을 활성화 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관이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5. 사법부의 AI 활용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인공지능(AI) 기술은 방대한 자료를 습득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AI 기술의 정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AI 기술은 입력된 데이터를 통한 판단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재판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통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판단, 사회적·윤리적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AI 기술이 판례 검색, 법률 관련 논문 분석 등 재판 업무를 보조할 수는 있겠으나,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6.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집단소송제도란 소액다수인의 공통의 피해를 일괄구제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 영미의 대표당사자 소송이나 독일의 단체소송 등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하여, 집단소송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는 방안과 제조물 책임, 개인정보 유출, 집단 환경피해 등 특정 분야에 대하여만 우선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일부 도입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도 소비자권익침해행위에 관한 소비자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어, 집단소송제로 논의되는 일부 제도는 우리 법에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 일정 분야에서는 분쟁해결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도의 일반적 도입 여부나 도입의 범위, 집단소송제의 요건과 절차법적 특례 등 많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입법을 통해 현명하게 결정하여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47.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최근 SNS 등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마약류가 비교적 손쉽게 확산되고 있고, 특히 호기심과 또래문화를 쉽게 수용하는 특징으로 인해 19세 이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차단되어야 할 것이고, 마약류에 대한 유통은 물론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벌의 범위와 양형기준은 충분한 공론화와 논의를 통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원인분석과 범죄 예방,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사회 전반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활기관, 행정기관 등에서 치료·재활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고, 특히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등도 확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8.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의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더불어 행정·정치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여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이 발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 사법기관의 독립성의 취지 및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필요성·편의성 등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입법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렉카 등의 사적 제재가 유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지적이라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반인의 치부를 폭로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버렉카(cyber wrecker)들의 활동이 폭로와 협박·공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부 범죄의 처벌 등과 관련하여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이나 인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한다는 불신에서 사적 제재가 유행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 검찰의 '별건수사'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과거 검찰에 '별건수사'의 관행이 있어 그 위법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위법성이 있는 수사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또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정보들이 위법한 별건 수사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법부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부터 광범위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51.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법의 해석에서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적 질서를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지?

○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수결의 원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헌법적 질서는 모두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이러한 핵심적 가치의 수호 및 조화를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 평등, 정의의 이념을 확고하게 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지는 않았는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보편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지 등 헌법이 부여한 여러 가치들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 여론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거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하여 그 책임에 비례하는 엄정한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전면 수정하여,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과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양형 기준을 추가 설정하였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후 도주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 과거 사법농단 사태에서 대부분의 재판관이 무죄를 받으며 법원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상세한 언급을 하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사법부의 정치 중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야할 일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영향과 지시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직무상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 재판관이나 법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관 스스로도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고, 개인적인 가치관을 우선하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5. 공정성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개인적 다짐이나 원칙은 무엇인가?

○ 헌법적 가치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관으로 재직시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재판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또한 재판에 있어서는 공정성에 의심을 가지게 할 어떤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높은 직업윤리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6. 대한민국 권력구조와 민주적 정당성 이원화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우리 헌법 입법부로서 제3장 국회를, 행정부로서 제4장 정부를, 사법부로서 제5장 법원 및 제6장 헌법재판소를 규정함으로써 3권 분립의 권력구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별히 사법부의 구성은 직접 선거에 의하지 않으나,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의 이원화는 여소야대로 현상으로 인한 정국경색 등 여러 어려움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소위 의원내각제 등과 같은 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필요는 없는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그러나 국가의 권력구조의 문제는 개헌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개헌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57. 국가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역할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헌적 요소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이나 제3호의 정당의 해산 심판은 입법부를, 제2호의 탄핵의 심판은 행정부 및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제4호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은 국가권력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5호의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역시 경우에 따라 입법부나 행정부 및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가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치주의의 준수라는 헌법정신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8. 계엄법의 필요성과 계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헌법 제77조는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면서 법률로의 위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 위 헌법조항에 따라 국회는 계엄법을 입법하여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계엄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9. 헌법 해석과 판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과 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재판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겠으나, 헌법재판관 개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적 비난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0.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설득력 있는 해석이 중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이유 제시만이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도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사건의 당사자나 이해관계기관의 주장 및 의견제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이에 대한 반박의 기회도 충분히 부여하는 동시에, 사회적 관심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통하여 헌법재판의 진행과정과 그 내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와 국민들 모두 그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및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1. 사법농단 논란 이후 법조인으로서 어떤 생각이나 소신을 세우며 직무에 종사해왔는지?

○ 먼저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고, 후보자 본인도 그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더 이상의 상세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관여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그러한 외관을 창출함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사법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다면, 그에 대해 제가 재직하였던 법원 구성원들 및 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저는 약 30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이 사안은 제게 법조인으로서 사법부 독립의 의미 및 가치를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사법부 독립의 의미 및 가치를 더욱 깊이 새기고 직무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62.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나 더 나와야 할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되 헌법적 원칙을 고수할 방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민주주의원리, 인간의 존엄, 기본권의 보장, 법치국가원리와 같은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헌법이론이나 법이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헌법이론과 법이론의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 이론들은 변화되고 있는 사회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따라서 사회적 변화도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헌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4. 곧 진행될 탄핵 심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 이는 '헌법 수호'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 시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헌법의 핵심 원칙이나 정신, 정치적·시민적 역량은 무엇인지?

○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중요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헌법을 수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를 믿고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만큼은 드리고 싶습니다.

65.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게 되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변화가 충돌할 때, 법적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할 것.

○ 민주주의원리, 인간의 존엄, 기본권의 보장, 법치국가원리와 같은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헌법이론이나 법이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헌법이론과 법이론의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 이론들은 변화되고 있는 사회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따라서 사회적 변화도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헌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6. 사법농단 논란 이후 법조인으로서 어떤 생각이나 소신을 세우며 직무에 종사해왔는지?

○ 제61항 답변과 같습니다.

6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나 더 나와야 할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되 헌법적 원칙을 고수할 방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민주주의원리, 인간의 존엄, 기본권의 보장, 법치국가원리와 같은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의 헌법이론이나 법이론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헌법이론과 법이론의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 이론들은 변화되고 있는 사회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가 정확히 반영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고, 따라서 사회적 변화도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헌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 다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다산은 개혁적인 의지와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정신, 공직자로서 항상 조심하는 마음가짐과 배려하는 정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법률가로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 해외 인물로는 윈스톤 처칠경(Sir Winston Leonard Spencer-Churchill)을 존경합니다. 처칠경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여러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의지력과 상황을 변화시키고 여러 의견을 조화롭게 중재하는 능력,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추진력 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후보자가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은 누구입니까?

○ 조무제 대법관님과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님을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였습니다.

3. 후보자 좌우명은 무엇인가.

○ 후보자는 특별한 좌우명보다는,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자는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4. 후보자는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의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법관으로서 오래 재직하였던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한 입장을 취함에 있어 단순히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실질적인 공평함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후보자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입니까?

○ 후보자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흠흠심서’입니다. 다산의 애민정신과 실용적인 사고를 배울 수 있었고,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흠흠(삼가고 또 삼가라)’의 의미를 배울 수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 필립 체스터필드의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는 아버지가 인생선배로서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편지가 감명 깊었습니다.

6.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1건, 아쉬움이 남는 판결 1건

○ 저는 모든 사건에서 법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결을 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기에 특별히 의미 있는 판결을 꼽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특별히 이목이 집중되는 판결을 많이 하였던 기억도 없습니다.

○ 후보자가 행정법원 재직 시,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폭발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에게 해외 출장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69171 판결). 해외 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후보자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치밀하게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외 파견자가 아닌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로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관해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유족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 저는 모든 사건에서 법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결을 하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기에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7. 후보자 법관으로 재직하며 판결했던 사건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유는?

○ 후보자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판결했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 특히 어느 판결이 어떠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해당 판결을 한 후보자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후보자는 매 사건마다 최선의 결론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8.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및 지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의 약 29년 간의 법관 및 약 4년 간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그 동안 축적한 재판경험, 전문성,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던 신념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좋게 봐주셔서 후보자로 추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뚜렷한 헌법관과 법조인으로서의 굳건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더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 헌법질서의 유지와 기본권 보호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헌법재판관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헌적 요소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아직 후보자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청사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같은 백송,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힘쓴 역대 재판관님들의 사진을 마주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사명에 맞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많은 결정들을 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하여 몇 가지만을 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환경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 이 결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그 원인을 줄여 대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의무라는 점을 밝히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3.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영향과 지시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직무상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 제도적으로는 재판관이나 법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4. 헌법재판소의 재판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현재에도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상세한 의견을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해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들이 크게 늘어나 사건적체가 심해지고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개헌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6.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성별, 나이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의 다양화는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지역 등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 제1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과 연동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재판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7. 현재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우리 헌법에 기초하여, 국내외 자료, 관련기관의 의견, 상충되는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이념 및 가치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중요 사건들의 선고가 지연될 수 없으므로, 인력편성, 재판절차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에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보는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조항의 ‘양심’은 재판관으로서 객관화된 직무상 양심이지, 개인의 신앙, 도덕심, 세계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외관을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제도적으로는 재판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

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저의 오랜 법관으로서의 근무 경험과 짧은 변호사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항상 논란이 있어 왔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와 같이 믿고 우려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 현재 제도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로펌 취업제한, 퇴직 전 최종 근무지에서의 사건 수임 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도 양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국선변호를 확대하며,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등 전관예우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여 전관예우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0.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전관예우의 근절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21.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인권 문제에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고, 또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어떠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 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 다만,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므로 청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 남녀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 남녀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는 것 즉,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 성평등은 남녀평등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울 수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 모든 성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남녀평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5.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그 원인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성별임금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

○ 우리나라의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데에는 성별간 종사 직종의 차이, 경력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기준으로 성별임금격차를 산정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 법 제도와 평등의식 등이 발전하면서 성차별적 현상이 많이 사라지기는 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나가도록 국가, 사회 및 그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6. 다양한 갈등의 양상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갈등의 양상 3가지와, 그중 가장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꼽아 주십시오.

○ 복잡한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 세대, 빈부, 노사, 경제, 이념, 불평등, 환경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모두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다만, 어느 하나의 갈등이 가장 중요하다거나 또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7.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 했음.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11조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 등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간 영역별 차별금지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고 법에 담을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일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성소수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지향에 대한 문제로서,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지속적인 갈등이 있어온 만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관하여는 국민들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문

제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아동 성범죄자의 국내 처벌 및 양형 정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개별 사건마다 양형의 판단 요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국내 처벌 및 양형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는 준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2007년 출범한 이래 국민의 공감대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 및 세분화하고, 특별감경인자의 요건을 엄격화하는 등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 양형위원회가 좀 더 사회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9. 우리나라 디지털성범죄의 양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디지털성범죄자의 국내 처벌 및 양형의 정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2020. 12.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한 이래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번 수정하는 등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형벌을 부과하고 강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므로, 범죄를 야기하는 여러 사회적 조건들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0. 사형제 존폐와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

[사형제 존폐]

○ 22항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

○ 28항 답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가해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이후 정부가 마련한 민간기업을 통한 피해 보상안(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당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한일청구권협정의 관계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정부가 한국 재단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고 고통을 겪은 분들이므로, 그 피해배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배상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 피해자분들의 의사 및 피해의 회복,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는 정치적·외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더 이상의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현재의 장애 상태가 초래된 애초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할 의무가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직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위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실현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장애상태가 초래된 것은 우리 정부가 청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든 청구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사용하여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것에도 책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정부는 그 장애상태를 제거하는 행위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 후보자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 일본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위안부 사건에서,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 후보자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우리 정부가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금전 배상책임을 주장할 경우 일본 측과의 소모적인 법적 논쟁이나 외교관계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국익이 훼손된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강제징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따라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제34항 답변과 같습니다.

36.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약 체결국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킨 것에 대해 일본 내 원폭 피해자 등이 미국이나 러시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일본 정부 책임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 언급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소송이 어떠한 소송인지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외국 법원의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위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 이유는?

○ 제36항 답변과 같습니다.

38. 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는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제34항 답변과 같습니다.

39. 후보자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이유는?

○ 제34항 답변과 같습니다.

민병덕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후보자 법관으로 재직하며 판결했던 사건 중,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유는?

○ 후보자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판결했던 사건들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특히 어느 판결이 어떠한 이유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는지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해당 판결을 한 후보자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후보자는 매 사건마다 최선의 결론을 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명예가 실추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 저는 법관 재직 시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하였고, 제가 한 재판에 관하여 절차나 결과 모두에 있어 스스로 돌이켜보아 부끄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 다만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던 중 소위 사법농단이라는 일련의 논란이 발생하였고, 후보자 본인도 그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관련 재판이 계속 중이므로, 더 이상의 상세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상대방에게 '재판관여행위'로 받아들여졌다거나, 그러한 외관을 창출함으로 인하여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나 사법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다면, 그에 대해 제가 재직하였던 법원 구성원들 및 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1건

○ 저는 그동안 모든 사건에서 법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결을 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기에 특별히 의미 있는 판결을 꼽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특별히 이목이 집중되는 판결을 많이 하였던 기억도 없는 것 같습니다.

○ 후보자가 행정법원 재직 시,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폭발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에게 해외 출장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69171 판결). 해외 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후보자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치밀하게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외 파견자가 아닌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로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관해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유족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4. 후보자가 판결한 사건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판결 1건

○ 저는 그동안 모든 사건에서 법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였기에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5. 본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 및 지명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저의 약 29년 간의 법관 및 약 4년 간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그 동안 축적한 재판경험, 전문성,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던 신념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긍정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좋게 봐주셔서 후보자로 추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게 된다면, 그동안의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 헌법재판관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뚜렷한 헌법관과 법조인으로서의 굳건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더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 헌법질서의 유지와 기본권 보호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헌법재판관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헌적 요소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 아직 후보자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 청사와 헌법재판소의 상징과 같은 백송,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힘쓴 역대 재판관님들의 사진을 마주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사명에 맞게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헌법재판소 재판관 징계절차 규정 미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헌법재판관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정을 어떠한 형식으로 마련할 지에 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징계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및 재판관의 독립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러 사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 여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 헌법재판소 설립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판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된 이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며,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수많은 결정들을 하여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하여 몇 가지만을 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환경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 이 결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그 원인을 줄여 대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의무라는 점을 밝히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 사법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관은 외부로부터의 모든 영향과 지시를 배제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직무상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 제도적으로 재판관이나 법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충돌, 역할 조정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각각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

○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원에 대하여 명령·규칙 및 처분의 위헌심사권 및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 등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양자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현행법 아래에서는 양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는 노력을 하여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이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비록 법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법률조항 중 특정의 영역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을 뜻하는 일부위헌결정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합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 따라서 한정위헌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그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4.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을 경우, 타 국의 사례를 수용·비교하며 재판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 헌법재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헌법질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재판절차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헌적 요소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 이론 및 실무, 선례와의 관계, 국내외 자료, 관련기관의 의견, 상충되는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이념 및 가치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외국의 입법례 또는 헌법재판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유사한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문제를 어떠한 헌법적 해석과 이론 및 실무적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였는지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수성에 바탕을 두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의 사례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에 관련된 하나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15.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사법부 기관 간 대립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은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앞의 문항들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우선은 사법부 기관 간의 대립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서로를 존중하여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습니다. 혹여 불행히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입법 등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해당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16. 헌법재판소의 재판헌법소원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현재에도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상세한 의견을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 매년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사건적체가 심해지고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증원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개헌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재판관 수 증원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8. 헌법재판관의 다양성(성별, 나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학력, 경력, 성별, 나이, 지역 등의 배분도 필요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가치관이나 철학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111조 제2항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관의 자격과 연동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재판관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9.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기본적인 소명과 책무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충돌과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헌법재판관의 소명과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20.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후보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질서의 유지와 기본권 보호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헌법재판관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헌적 요소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 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야 하는지?

○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 갈등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약 29년 간의 법관 및 약 4년 간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그 동안 축적한 재판경험, 전문성,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던 신념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현재 헌법재판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우리 헌법에 기초하여, 헌법 이론 및 실무, 선례와의 관계, 국내외 자료, 관련기관의 의견, 상충되는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이념 및 가치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러나 중요 사건들의 선고가 지연될 수 없으므로, 인력편성, 재판절차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에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보는지?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양심’은 재판관으로서 객관화된 직무상 양심이지, 개인의 신앙, 도덕심, 세계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정치적 고려가 작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외관을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4.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재판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재판관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5. 전관예우에 대한 후보자 견해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해결법은 무엇입니까?

○ 저의 오랜 법관으로서의 근무 경험과 짧은 변호사 근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저는 전관예우를 경험한 바 없고 그러한 관행이 실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 그로 인하여 항상 논란이 있어 왔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와 같이 믿고 우려하고 있다면 그러한 인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 현재 제도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이 퇴직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 취업제한, 퇴직 전 최종 근무지에서의 사건 수임 제한 등이 시행되고 있고, 법원 내부적으로 양형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국선변호를 확대하며, 법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여 전관예우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26. 후보자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다면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전관예우의 근절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27.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 거취에 대한 견해는?

○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하게 되는 때는 거의 만 67세가 되는 시기여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변호사활동을 할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8. 본인이 담당했던 사건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던 사건의 건수와 목록(사건번호 또는 판례번호)은 무엇인가요?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헌법적 쟁점 한 가지를 꼽자면 무엇인가요?

○ 해당 질의와 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29.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30. 후보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이 재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건이 있는지?

○ 후보자의 장모님이 명의신탁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을 제기한 것을,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후보자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소송을 수계한 것이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121). 동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처남에게 권리가 이전되어, 후보자의 배우자는 소송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장모님과 처남들이 함께 장남인 정OO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실이 있고, 그 판결내용 중에 후보자의 배우자에게도 일정 금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53546). 그럼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정OO이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정OO의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그 밖에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고가 된 약정금 소송 및 가압류 사건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머641122, 2018카단817289, 2018차전1290908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53546 사건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건입니다.

○ 후보자는 처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며,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이 관계된 다른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은 없습니다.

31. 후보자는 자녀들의 특정 학교 입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또는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는지?

○ 2000년 경 서울 잠원동에서 거주하다가 전세기간 만료로 두 블럭 정도 떨어진 신화아파트(잠원동 54-7, 신동초등학교 배정)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장남이 종전 거주지(잠원동 71-11, 반원초등학교 배정)에서 사귀던 친구들과 함께 초등학교를 입학하였으면 하는 마음에(당시 7세에 입학을 고려하고 있었음) 종전 거주지에 인접한 부모님댁(잠원동 70)에 2000. 10. 24. 배우자와 장남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다.

○ 반원초등학교 측에 학교 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2001. 2. 21. 실제 거주하던 신화아파트로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장남은 신동초등학교에 입학한 사실이 있습니다.

○ 경위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32.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정당·시민단체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33.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후원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34. 후보자가 국내외 공무출장 또는 해외연수에 배우자,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 2004년경 법원에서 국제화연수라는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법관에게 연수 기회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족을 동반하였고, 가족을 위한 추가 비용은 후보자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 2007년경 사법연수원 교수를 마치고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기 직전 법원에서 사실상의 공로연수와 같은 목적으로 해외 출장의 기회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가족을 동반하였고, 가족을 위한 추가 비용은 후보자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35.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국가 및 도시, 체류기간, 사유, 관련 비용 부담은 누가했는지 상세 적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36.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거나 달랐던 적이 있는지?

○ 31항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후보자와 배우자가 사인간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사유

○ 후보자 및 배우자의 사인간 채권, 채무 현황은 없습니다.

38.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관련 사유와 증빙자료, 또한 연체한 사실이 있는지?

○ 2022. 7. 20.경과 2022. 9. 10.경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각 7만원을 납부하였는데, 배우자가 제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운전하다가 법규를 위반한 것입니다.

○ 그 외 추가로 과태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과태료를 납부한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더 이상의 자료는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논문 또는 연구활동 등에서 논문 표절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0. 후보자의 자녀는 초·중·고·대학(원) 등 재직 당시 각종 인턴(쉽)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 일체 제출

○ 후보자의 차남은 2020년 대학교수의 추천으로 건축 관련 업체인 “센 구조연구소”에서 약 두 달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장남은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바 없습니다.

○ 후보자 차남의 인턴 활동 관련 자료는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 등 적용 가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

○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5조에 따르면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는 “수괴(首魁): 사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군형법의 적용대상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자에 한정됩니다(제1조 참조).

○ 그런데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아래 '계엄법' 및 '국회법' 개정안 관련 후보자의 의견

- (계엄법 개정안 1) 첫째,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함에도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하여,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함.

- (계엄법 개정안 2) 둘째,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7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않은 '단체행동'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이를 삭제함.

- (계엄법 개정안 3) 셋째,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하지 않아 위헌,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함.

- (국회법 개정안) 넷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하였으며,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하여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함.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하여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대상에서 '단체행동'을 제외하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결의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계엄 시행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할 때까지로 규정하자는

취지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최근 여러 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숙고를 거쳐 합헌적인 법률 개정을 하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43.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

-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하여, (의안번호 2204700) 및 관련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아래 5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1) 직무수행 시 이사가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화

○ 2024. 10. 15. 발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0, 이하 '개정안'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은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명시하고, 이에 따라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 제382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 이러한 개정안은 이사의 직무수행이 총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회사와 일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의 '총주주의 이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고, 법무부는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학계, 경제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용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이사의 의무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학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 의무화

○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이 의결권을 이사 후보자 1명 또는 수 명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82조의2).

○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를 도입하거나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도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 제542조의7 제3항). 이러한 개정안은 경영건전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의견을 대변하고 대주주를 견제하려는 집중투표제도의 취지를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는 자본다수결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거나 사적자치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일 수 있

으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를 의무화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학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및 선임 확대

○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며, 상장회사의 사외의사(독립이사) 선임의무 비율을 이사 총수의 1/4에서 1/3으로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개정안 제400조, 제542조의8 등)

○ 이러한 개정안은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실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한하여 독립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비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한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확대가 기업의 자율성이나 사적자치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일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외이사의 명칭변경이나 선임의무 확대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학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 확대

○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중 적어도 2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542조의12 제2항). 이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적어도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현행법보다 분리선임되는 감사위원회위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이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고 있듯,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감사위원회 감사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자본다수결원칙이나 사적자치원칙에 반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할 것인지는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학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주주총회 도입

○ 개정안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 이는 주주의 주주총회 접근성을 향상시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도 검토되고 있듯, 개정안에 대하여는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범위 및 운영방식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주주권 행사의 한계나 기업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고, 반대로 제도 도입과 동시에 이를 의무화할 경우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현실적 문제를 검증할 기회가 없어 회사가 부담할 경제적·법률적 위험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다거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와 운영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상법에서 규정할 것인지, 규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학계, 경제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시 그 법률안이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에 관한 사안일 경우, 그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가부

○ 헌법 제53조 제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법률안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헌법은 명문상 그 행사 사유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대통령이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 내지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구체적인 행사에 관하여 더 이상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 헌법 제53조 제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대통령의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별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현상유지일 필요는 없지만 사고인 경우에는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권한대행의 범위가 일괄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및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구체적 행사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로스쿨 졸업자의 5년 내 응시횟수 5회 제한 '변호사시험법' 관련, 이른바 '오탈자'가 로스쿨에 다시 입학해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경우에도 입학조차 금지하는 것이 응시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 의견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18. 3. 29. 2017헌마387등; 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등; 헌재 2020. 11. 26. 2018헌마733등; 헌재 2021. 12. 23. 2019헌바552, 헌재 2022. 2. 24. 2021헌마392등; 헌재 2023. 6. 29. 2022헌바67등 다수). 위 결정들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5년 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재응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도 있습니다(헌재 2016. 9. 29. 2016헌마47등; 헌재 2021. 12. 23. 2019헌바552).

○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현재에도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3헌마855, 2023헌마1232 등 다수).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23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는 20번 이상의 거부권 행사해 왔음. 거부권 행사 사안별 후보자의 의견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건별 의견을 의미)

○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행사 사유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남용될 경우 입법권이 침해되거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므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민주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서 정치적 현안이 되는 개별 개정안 각각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조법 2,3조 입법 필요성과 그 합헌성에 대한 후보자 의견, 노동법원 설립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상세히 작성 바람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면책 요건을 넓히고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며,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2023. 11. 9.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2023. 12. 8.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법률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노동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판단을 위하여 노동법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나,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재판부 구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9.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사건이 대법원 계속 중임. 사실심에서 피해자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법무부 장관은 기어이 상고하여 피해자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번 대법 판결 후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도 국가가 부득이 상고해야 한다고 보는지?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탄핵소추, 정당해산 등의 형태로 사법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는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의견

○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탄핵의 심판'을, 제3호는 '정당의 해산 심판'을 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관할에 해당하는 문제를 헌법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자체는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다수의 문제가 선거를 통해 주권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헌법재판을 통하여 해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대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 판단하는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의견

○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양심’은 법관으로서 객관화된 직무상 양심이지, 개인의 신앙, 도덕심, 세계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법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외관을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2. 검사탄핵에 대한 의견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

○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헌법재판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나3, 2024헌나4, 2024헌나5).

○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23. 3. 23. 2022헌라4), 같은 법률의 내용 중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에 대하여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1370 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헌재에서 결정한 사안 내지 현재 심리 및 평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사법행정기구의 비법관 구성에 대한 의견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참고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사법부의 행정기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특별히 해당 회사 또는 대표와 인연이 있는 등의 이유로 근무하는지?

*** 후보자는 성우파일(주) 사외이사로 근무 중인데, 아래 내용에 대해 회신 바람.**

○ 후보자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성우파일(주)의 대주주인 고교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가 되었습니다.

56. 본인/가족/특수관계인/친척 등이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했던 적이 있었는지?

○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 특수관계인, 친척 등이 해당 회사 주식을 보유한 적은 없습니다.

57. 본인 또는 후보자 관려 로펌이 해당 회사의 사건을 수임했던 적이 있었는지?

○ 후보자나 관련 로펌에서 해당 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바 없습니다.

58. 본인이 법원 재직시절 해당 회사 또는 대표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는지?

○ 후보자가 법원 재직 당시 성우파일(주) 관련 사건을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59. 가족 전체 보유 주식이 시가 기준 97%가 해외 주식인 것이 사실인지?

*** 본인/부인/자녀 전체의 주식 보유 시가는 2.53억원이며, 이 중 97%가 해외 주식으로 보입니다.**

○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0.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 후보자와 가족들은 주변 소개나 추천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61. 배우자/자녀 보유 주식이 겹치는 종목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이유는?

○ 후보자의 배우자는 증권회사를 통한 간접투자인 랩투자를 하고 있고, 자녀들이 랩투자의 추천종목을 참고하여 따라서 사다보니 종목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62. 본인/배우자/자녀 주식 투자는 직접 하는지, 누군가 대신 매매 하는지, 간접투자 방식으로 하는지?

○ 61항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내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더 많이 활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면, 국내 자본시장법 또는 상법 등의 개정 등의 측면에서 후보자 의견은?

○ 먼저 제가 직접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 또한 자본시장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 원인의 분석이나 해결방식 등에 있어 경제계, 학계에서 각양각색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통일된 어떠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예컨대 세재개편, 공매도 제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시장 신뢰의 회복, 주가 변동성 관리 등).

○ 국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을 줄이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책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실현할 것인지 및 이를 법률로서 이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는 행정부가 학계, 경제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법 제정의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장남의 초기 주식 투자 자금 출처는?

○ 장남은 이전부터 자신이 모아둔 용돈과 2022. 7.부터 지에스건설(주)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소득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에 첨부된 후보자 장남의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120-134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현재 소유 중인 성동구 소재 아파트 매입 전 소유하던 아파트의 처분 시점.

○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 매입 전 소유하던 아파트는 없습니다.

66. 후보자의 부친 조태호 님의 공무원 경력 일체 (입직 경로 및 근무처 이력 일체)

○ 후보자의 부친께서 농림수산부에서 근무하시다 농촌영양개선연수원장을 끝으로 1993년에 퇴직하신 바 있습니다.

○ 부친께서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신 후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1958.경 특채로 선발되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시고, 그 이후 보통전형으로 합격하시어 계속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경력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66. 경력증명서(조태호)

박주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5.16 군사정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5. 16을 쿠데타로 표현한 바 있고(헌재 97헌바51), 대법원 역시 2011년 6월 보도연맹 관련 판결문에서 5. 16. 쿠데타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 민주적 헌정질서가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으로 무너지고 헌법에 정하지 아니한 절차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5·16은 군사쿠데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1972년 박정희의 유신 계엄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당시 박정희의 계엄포고 내용은 언론 · 출판과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및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어 위헌 ·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그러한 판결 내용에 동의합니다.

3. 12.12 군사반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12. 12. 사태는 군사반란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한 판결 내용에 동의합니다.

4.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등을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한 판결 내용에 동의합니다.

5. 지난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지 위한 긴급한 상황에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대한민국 상황이 이와같은 상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이러한 절차가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77조 제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려진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야당의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 등을 이유로 들며 “계엄은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과거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등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전두환 장군 등 군인들이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12/12)을 통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해당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

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77조제3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 헌법 문언에 명시되지 않은 국회에 대한 조치 또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포고령 등의 명령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96노1892)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는 행위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동의하십니까?

○ 형법 제91조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 현재 해당 질문과 관련될 수 있는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동의 여부나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법원의 판례(서울고법 96노1892)에 따르면, 형법 제91조에서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라는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혁명과 같은 사태만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와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 형법 제91조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 현재 해당 질문과 관련될 수 있는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현재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를 여러기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로써 어느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현행법에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검수사까지 포함해서 답변해주십시오.

○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 수행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24조에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4. 12. 12.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인 동시에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24. 12. 3.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인 동시에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자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지난 12월 1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탄핵 심판에 임하시겠습니까?

○ 국회에서 2024. 12. 14.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당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모든 헌법재판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17.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12일 비상계엄이 헌법의 틀 내에서 행사한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위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계엄의 형식을 빌려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계엄에 요건이 맞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탄핵사유 합치한다는 의견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탄핵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입니다(2024헌나8). 질의하신 내용 역시 심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사고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특히, 수사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때와 구속기소되었을 때의 경우 등을 구분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학계에서는 헌법 제71조의 '사고'를 ① 대통령이 존위하면서도 신병이나 장기간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② 국회의 탄핵소추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대통령이 구속 또는 구속기소되었을 때 헌법 제71조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정치적인 현안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혐의가 너무 명확하고, 국정공백이 예상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위 사건에 관여하게 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신속하고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및 심판에 대해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여 탄핵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헌법재판소는 전직 대통령에 관한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는 헌법 제65조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정도가 중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이 위해한정도'의 중대함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탄핵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입니다(2024헌나8).

○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후보자께서 만약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어떤 마음가짐과 각오로 대하시겠습니까?

○ 국회에서 2024. 12. 14.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당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습니다.

○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하게 된다면, 모든 헌법재판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우리나라의 헌법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24.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난 4월 3일,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한바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하여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려 정지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절차의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절차가 필요한 점, 적법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보호도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해당 탄핵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만큼(2023헌나3),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해당 탄핵심판사건에서 이루어진 심판절차

정지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 (심판절차의 정지)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에 대해 심판절차 중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려 정지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절차의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절차가 필요한 점, 적법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보호도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탄핵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입니다(2024헌나8).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하므로,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와 헌법수호책무(헌법 제66조)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탄핵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입니다(2024헌나8).

○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현재 후보자 등을 제외하고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6명의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시작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24. 10. 14. 2024헌사1250 사건에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2024헌마900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하였습니다.

○ 일각에서는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6인의 재판관의 모두 동의하는 경우 종국결정의 선고가 가능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 결정의 정당성 확보나 사건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가 완전체인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 가처분결정의 본안사건인 2024헌마900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고, 재판관 6명이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도 종국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사건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헌법재판소법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차례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180일 내에 이뤄졌지만 법관 등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심판은 180일을 초과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심판의 종국결정의 선고를 180일 초과한 헌법재판소의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위 규정을 훈시적 규정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조사 절차, 관련 법리 연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헌법재판의 지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9.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고, 가장 시급히 해결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복잡한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 세대, 빈부, 노사, 경제, 이념, 불평등,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모두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저마다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문제만을 가리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을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30.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명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 그리고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스스로 가지는 가치의식이나 주관적 평가인 명예감정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재판에 관하여 절차나 결과 모두에 있어 스스로 돌이켜보아 부끄럽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항상 실력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공감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생활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1.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내렸던 판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후보자는 여군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육군 중대장이 자신에 대한 전역명령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8. 27. 선고 2015구합558437 판결). 위 판결에서 후보자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폭력 행위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의 특수성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군 기강과 사기를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후보자는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어민 측 로펌의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이를 피해어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008444 판결). 위 판결의 1심은 피해어민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화해금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판결을 하였지만, 후보자가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원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 후보자는 보육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된 원장에 대해 해임 및 중징계 처분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원고가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도, 원고가 처음부터 보육원생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소년법상 통고 제도 및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고려한 후 이를 실시하기 위해 회의 개최와 내용을 주도한 것으로 치료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두 고의에 의한 행위임이 명백하여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지나치게 불이익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하며 기각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35198 판결).

32.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골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뚜렷한 헌법관과 법조인으로서의 굳건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에 더하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3. 헌법재판관이 되면 반드시 추진할 과제와 목표는 무엇입니까?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우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본분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위헌·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특히 천부적인 인권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본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의 제도가 없을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34. 헌법재판소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헌법연구관 등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소수자와 사회 각층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매 사안마다 헌법가치를 고민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월 항쟁을 수록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등을 추가하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에 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도이전은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 10. 21. 2004헌마554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에 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여부는 현재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 헌법에 생명권과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재해예방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의 사명을 보다 명확하게 선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께서 결정하실 문제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9. 기존의 영장청구주체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영장의 발부권한은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영장청구주체를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할 사항으로 바꾸는 것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개헌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40세로 두는 것이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의 본질상 이러한 연령 제한이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40세의 연령 제한이 선출되는 자의 능력, 자질 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에 대한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41. 남녀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남녀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지는 것 즉, 성별에 따른 차별을 지양하는 것입니다.

○ 성평등은 남녀평등 개념에 포섭되기 어려울 수 있는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등 모든 성에 대한 차별을 지양하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에 한정되지 않고 성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남녀평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2.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11조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따른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장애인 차별과 성차별 등에 대하여 개별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간 영역별 차별금지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고 법에 담을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일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에 관하여는 국민들의 뜻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2항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저의 약 29년 간의 법관 및 약 4년 간의 변호사로서의 경험과 그 동안 축적한 재판경험, 전문성, 그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의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고자 하였던 신념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 후보자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11조 제1항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4조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와 신체장애자, 질병·노령 등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사회적 약자'의 정의를 고찰하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적 약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성소수자 등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리기 어려운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46. 여성할당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여성할당제는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 중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여성할당제는 과거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는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남녀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사회가 변화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후보자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할당제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할당제를 어떠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7.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회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인권 문제에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고, 또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어떠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8. 공적인물의 사생활 보호와 일반 국민의 알권리 중 무엇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적인물,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개별 사안에서 공적인물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권리의 관계를 숙고하고 사안에 따라 가치를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9.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임신중절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2017헌바127).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인 2020. 12. 31.이 경과하였고, 이에 따라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인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법의 공백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규율하는 입법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50. 외국인 근로권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기본권의 성질에 좌우되는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과 같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기본권들은 외국인에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 중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역시 외국인에게 보장되고, 고용허가를 받아 우리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인력으로서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들의 직장선택의 자유도 인간의 권리로서 보장되지만,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에게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보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1. 12. 23. 2020헌마395 등 참조).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한다고 하여 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존중합니다.

51.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 조항 위헌결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내지 진술조력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2021. 12. 23. 2018헌바524).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아니하여 방어권 제한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형사절차상 권리 보장과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을 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전적으로 금지하거나 피고인을 단순한 처벌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판부 스스로, 또 제도적으로 적절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 현행 형법,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기타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거나 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물, 게임물 등의 창작물의 제작과 유통을 원천금지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형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의 법률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영상물, 게임물 등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명확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영상물이나 게임물 역시 헌법 제21조 제1항(표현의 자유)와 제2항(검열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게임 제작·기획·배급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인 청구인들이 관련 법률조항에 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2024헌마909).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후보자께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처벌 조항에 대하여 개정 내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 공적인물,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기각 5: 위헌 4)을 하였습니다(2017헌마1113 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54. 최근 21만 여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등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배,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및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게임 제작, 기획, 배급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인 청구인들이 '범죄 · 폭력 ·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4헌마909).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이러한 게임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는 자는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받게 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 집회·시위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조인으로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185조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0. 3. 25. 2009헌가2).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위 법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면서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이상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56. 최저임금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저임금제도는 생계가 곤란할 정도의 저임금노동을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최저임금의 증가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지나치게 증대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 그러나 헌법 제32조 제1항 후문은 '국가는 사회적 ·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제는 헌법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7.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된 바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법에 명시된 의무가 명확하지 않고 처벌이 과도하다며 위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2022헌마702, 2024헌마287).

○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을 제외한 것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차별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습니다(2022헌마702, 2024헌마287).

○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위 사건들의 심리에 관여하여야 합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 노동전문법원 신설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노동사건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의 전문성 있는 판단을 위하여 노동법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나,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재판부 구성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60. 노동쟁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노조법 3조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면책 요건을 넓히고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2023. 12. 8. 재표결에서 부결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특정 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의율하는 것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도,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재 2022. 5. 26. 2012헌바66). 다만 이 결정에서는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은 채 단순히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단순파업)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5인의 일부 위헌의견이 있었습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에서 충실히 심리하여 내려진 판결 및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판결과 결정을 모두 존중하고, 위 판결 및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탄소 배출 등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에 대해 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하도록 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환경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40퍼센트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정부가 2023. 4. 11.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중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는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결정하였습니다.

○ 이 결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생활의 기반이 되는 환경이 훼손되고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그 원인을 줄여 대응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기후위기 대응의무라는 점을 밝히고, 기후변화의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제한의 측면에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대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이전 특검 도입 사례들에 비추어봤을 때, 대통령이 연루된 사안에 대해 여당을 배제하는 특검후보 추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위 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바, 위 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입니다. 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의 각 가결·선포행위 등과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이 최근 헌법재판소에 청구되어 현재 심리 중입니다(2024헌라7).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은 원칙적인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그 비중의 측면에서 동등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41조 제1항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여, 각각 주권자의 선거에 따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의 방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그 비중이 서로 동등하다거나 어느 한쪽이 우월한지 여부보다는 각 기관이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서로 균형을 이루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5.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제약이 존재하여 무제한적인 거부권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53조 제2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의 행사 사유나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이 남용될 경우 입법권이 침해되거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므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상 내재적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민주주의 및 권력분립 원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6. 헌법상 감사원은 독임제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구입니까?

○ 헌법은 제98조 제1항에서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은 제11조에서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며, 제12조에서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헌법과 감사원법 조항에 비추어,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알고 있습니다.

67. 사형제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 다만,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므로 청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 후보자는 존엄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09년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2009다17417)을 통해 처음으로 존엄사가 허용되었고,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 오늘날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넘어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 존엄사를 허용해야한다는 논의가 있고,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조력존엄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2023헌마1396) 등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위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 해산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하여 내린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 비동의간음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비동의간음죄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형사처벌한다는 것으로, 현행 형법이 폭행과 협박이라는 물리력이 있어야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현행 형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비동의간음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비동의간음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로 범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 해외입법례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 처벌 법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2.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가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재 1999. 12. 23. 98헌마363, 판례집 11-2, 770).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인정되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국방의 의무이행에 상응하는 국가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3. 국가보안법 존치 논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가보안법이 과거 권위주의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사례가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지금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 국가보안법의 개정이나 폐지는 결국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2023. 9. 26. 2017헌바42등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조항(제7조 제1항)과 이적표현물조항(제7조 제5항)의 위헌여부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재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4헌바134) 사건 등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사법원법 제2조, 제3조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평시에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군 사법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민소환제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를 그 임기만료 전에 직위에서 해임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제2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민소환제의 도입 필요성이나 헌법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의 도입 여부에 관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 국민발안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국민발안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헌법개정안, 법률안, 공동체에서 결정할 사항 등을 국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국민발안은 국민에 의한 제안이 직접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직접발안과 발안에 대하여 대의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간접발안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양자가 혼합되는 방식으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 1954년 개정 헌법 및 1960년 개정 헌법은 민의원의원선거권자 50만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98조 제1항), 1962년 개정 헌법도 국회의원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제119조 제1항),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우리 헌법은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인정하고 있고(제52조),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 또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권의 행사가 간접발안과 비슷하게 운영될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이나, 국민발안 가운데 직접발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발안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 문신사 합법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법 제27조의 합헌, 위헌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독립된 문신시술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문신사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허용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특히 미성년자의 문신에 관한 안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시어 현명하게 결정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78.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법무부 산하에 외부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법무부 산하의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말한 '독립된 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니며 이는 위헌결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변협 및 시민사회).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 의견은 보호의 개시 또는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의 위헌성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 등).

○ 이와 관련하여 2024. 10. 7. 정부는 외국인 보호 · 재보호에 대한 이의심사, 계속 보호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두는 취지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구금기간의 상한을 18개월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18개월 이후에도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보호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의원실 등은 재보호를 인정할 경우 이론상 기간제한 없는 구금이 가능하다며, 이는 위헌결정을 형해화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 의견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또는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의 위헌성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등).

○ 이와 관련하여 2024. 10. 7. 정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8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재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 2023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보호제도와 관련해서 구금기간의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2020헌가1 사건). 이에 대한 개선입법으로 정부는 최근 구금기간의 상한을 최대 36개월(18개월+18개월)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2204587]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해서 36개월의 상한기간은 '출입국관리법상의 보호가 일시적, 잠정적 강제조치'라고 본 위헌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법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 의견은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또는 무기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점의 위헌성을 지적하였습니다(헌재 2023. 3. 23. 2020헌가1등).

○ 이와 관련하여 2024. 10. 7. 정부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8개월의 범위에서 그 사람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추가로 18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 국회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 수사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부패, 경제범죄) 범죄로 제한했음에도,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사실상 수사범위를 넓힌 것과 관련해 모법위임 위반이란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법률유보원칙상 모든 행정작용 및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다른 국가기관인 법무부의 업무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승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의 ‘양심’은 재판관으로서 객관화된 직무상 양심이지, 개인의 신앙, 도덕심, 세계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욱이 정치적 고려가 작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분쟁을 사법적(司法的)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 헌법과 법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거나,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외관을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재판관이 자신의 소신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질서의 유지와 기본권 보호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헌적 요소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헌법질서의 유지와 기본권 보호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자 헌법재판관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우리 사회 전반의 위헌적 요소들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바로잡음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현재 헌법재판소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우리 헌법에 기초하여, 국내외 자료, 관련기관의 의견, 상충되는 여론 등을 모두 검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이념 및 가치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 그러나 중요 사건들의 선고가 지연될 수 없으므로, 인력편성, 재판절차제도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에 우수한 인력을 확충하며, 구체적 사건에서 집중심리 등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봉직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며, 저의 맡은 본분인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 판사재직 시 내렸던 판결 중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 5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특별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언론에 보도되었고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1: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을 위해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폭발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근로자들에게 해외 출장자로서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69171 판결)

- 해외 파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후보자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충실히 따르면서도 당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해외 파견자가 아닌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로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 출장자'로 보아 국내사업장에 관해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된다는 이유로 유족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 사례 2: 군 복무 중이던 이등병이 선임병 구타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일명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2078104 판결)

- 위 판결에서 후보자는 보도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허위인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

방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국민들에게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였는바, 후보자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언론 보도는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례 3: 교도소 특혜 의혹(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2088750)

- 위 판결에서 후보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원고가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기사에 보도된 내용의 본질적인 핵심이라 할 수 없고 사소한 것일 뿐이어서 그 시정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례 4: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어민 측 로펌의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이를 피해어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008444 판결).

- 위 판결의 1심은 피해어민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화해금을 청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 판결을 하였지만, 후보자가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는 위원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계약에서 지연손해금 부분을 성과보수로 약정한 것이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례 5: 보육원생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폭언과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된 원장에 대해 해임 및 중징계 처분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원고가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35198 판결).

- 위 판결에서 후보자는, 원고가 처음부터 보육원생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소년법상 통고제도 및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고려한 후 이를 실시하기 위해 회의 개최와 내용을 주도한 것으로 치료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두 고의에 의한 행위임이 명백하여 해임 등 중징계 조치가 지나치게 불이익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7. 판사재직 시 내렸던 판결 중 스스로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판결 5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후보자는 판사재직 시 매 사건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아쉬움이 남는 판결은 없습니다.

8. 판사재직 시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판사재직 시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건은 몇 건입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후보자는 법관 재직 중 우리 사회의 약자나 소수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 저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정'이란 단순히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실질적인 공평함을 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 관련하여 한 가지 재판 사례를 소개한다면, 후보자는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어민 측 로펌의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이를 피해어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008444 판결).

11.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및 결정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에서 대통령을 파면하는 탄핵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여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를 하였고, 그것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여 탄핵인용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지난 대통령 탄핵 당시 이어졌던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이며,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하는지 후보의 개인적인 평가를 밝혀주십시오.

○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촛불집회는 주권자의 의사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준엄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세계에 보여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13.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결정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2013헌다1 결정에서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위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 해산의 불가피성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가 깊이 고민하여 내린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위 결정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정부에게만 준 이유, 정당해산심판제도를 없애자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 헌법에서 정당해산제도는 1960. 6. 15. 제3차 개정 때 도입되었습니다(제13조 제2항). 우리 헌법은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소추권자)를 정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이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를 정부로 한정한 이유에 관해서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법적으로는 의회와 정부 모두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 제8조 제4항의 존재에 의하여 정당은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되므로,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의 성격도 가집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제8조 제4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

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당의 해산 심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폐지 여부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 헌법 개정을 통하여 정당해산심판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는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현명하게 결정하실 문제이고, 헌법재판소 후보자로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와 관련

(1) 재판헌법소원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의 입장 차이가 있는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 4. 28. 2016헌마3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 2022. 6. 30. 2014헌마760등 결정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을 모두 제외하기 위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

다.

○ 헌법재판소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은 현재에도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상세한 의견을 밝히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형결정의 기속력

- 대법원은 국각배상법상 구상권 사건등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은 법원에 대하여 기속력을 갖지 못하는 단순한 견해표명에 불과하다며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헌재의 변형결정이 기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성 심사를 하면서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한정위헌결정은 비록 법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법률조항 중 특정의 영역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을 뜻하는 일부위헌결정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합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 따라서 한정위헌결정도 기속력이 인정되는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그 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됩니다.

(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 관련

-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이나 대법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고, 명령·규칙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그 명령·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관습법

- 대법원은 관습법은 헌재가 위헌법률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나, 헌재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에 대해서도 위헌심판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해 적용된 관습법'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하였고(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그 후 '여호주 사망시의 유산승계에 관한 관습법'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재 2016. 4. 28. 2013헌바396등).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5) 위와 같이 대법원과 헌재의 헌법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가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우리 헌법과 법률은 법원에 대하여 명령·규칙 및 처분의 위헌심사권 및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위헌법률심사권, 헌법소원심판권 등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그 역할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양자간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현행법 아래에서는 양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는 노력을 하여 상호 충돌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호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재판소는 법원을 존중하고 그에 기초하여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를 하고, 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헌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6.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인씩 임명, 지명하도록 한 헌재재판관 구성방식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헌법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분립된 3권에 각기 균등하게 재판관 임명·선출·지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지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도 사법작용이어서 법률과 재판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8명으로 구성된 각 재판부중 3인은 연방최고법원들의 법관들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몫을 대법원장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의 경우 전원 국회 동의(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선출 몫(3인)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에서 이처럼 규정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헌법이 대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분립된 3권에 각기 균등하게 재판관 임명·선출·지명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장과 국회 선출 몫(3인)에 대해서만 국회 동의(표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재판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개헌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8.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헌법재판소법에도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재판소장 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어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 임명시 재판소장 임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재판관 재직 중 재판소장으로 임명되었던 전임 박한철, 이진성, 유남석, 이종석 재판소장 모두 잔여임기 동안만 소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하지만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성, 위상,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해 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9.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행 헌법은 재판관을 9명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재판관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문제는 최근 사건의 접수 건수가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및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결정정족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문제는 헌법을 개정하여 재판관 수를 증원하는 문제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 헌법재판관 등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명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석 상황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 사건 심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제도적인 개선방법으로는 임기만료 또는 정년도래로 인하여 퇴임하는 재판관은 후임재판관의 임명시 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직무계속제도나 예비재판관제도 등이 고려됩니다. 다만, 직무계속제도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6년의 임기가 연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고, 예비재판관 제도는 헌법에서 정하는 재판관 '수'의 증원으로 연결되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공백이 빈번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이라는 의견과 법률로 개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어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 임명시 재판소장 임기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임기와 같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나, 헌법 제112조 제1항은 재판관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개선방안에 관하여 자세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면, 만약 이러한 권한이 없어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가 가지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집니다(헌법 제54조). 그리고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집니다(헌법 제52조).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도 그 독립과 제도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직접 예산안 편성권이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나, 예산안 편성과 법률안 제출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률의 단계에서 마련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는 헌법의 개정 또는 법률의 제·개정 문제로서 국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현명하게 결정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기간을 18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주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심리 기간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하며, 심리 기간 단축을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 기간보다 심판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조사 절차, 관련 법리 연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사건 자체가 늘어난 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 많아진 사건에 비하여 헌법연구관의 숫자는 적으므로, 매년 조금씩 헌법연구관이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회적인 중대 관심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더 큰 폭의 증원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또한 남소자에 대한 대책 입법, 헌법재판소 내부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하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4.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들의 심리가 위 기간보다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거조사 절차, 관련 법리 연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심리 지연 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큰 폭의 증원이 필요하고,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소자에 대한 대책 입법, 4인 합의로 기각하는 방법의 입법 등 시스템적인 변화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5. 개헌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개헌이 이뤄진다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현행 87년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 및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로부터 약 37년이 흐른 현 상황에서 헌법이 많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사회 전체의 지혜를 모아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개헌은 고도의 정치적 문제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개헌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현직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에 대해 견해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대해 헌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헌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궁극적으로 개헌의 필요성 여부나 개헌 사항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개헌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국민의 저항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와 저항권이 행사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에는 저항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저항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뉘지만,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및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규정한 헌법전문을 근거로 현행헌법이 간접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도 저항권이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 · 비폭력, 적극적 ·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고 판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더

자세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5. 16. 군사정변에 대하여 이를 군사쿠데타로 규정하는 시각과 군사혁명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민주적 헌정질서가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으로 무너지고 헌법에 정하지 아니한 절차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5·16은 군사쿠데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8.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반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1조의2 제1항).

○ 12. 12 군사반란에 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사력을 동원하여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므로 쿠데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법원 역시 1997. 4. 17. '12. 12. 사태는 군사반란이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러한 판결을 존중합니다.

29.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5·18민주화운동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도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1조의2 제1항).

○ 현재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추가하는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인 현안에 대하여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최근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소시효제도는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측면이 있지만 중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사회적 정의관념에 반하고 중대 범죄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국회 입법으로 2012년 13세 미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 준강간 등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배제된 데 이어 2015년 살인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배제되었습니다.

○ 다만 공소시효 배제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배제대상의 추가 확대는 선진 각국의 입법례, 학계·법조계 및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오판에 의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형제의 폐지가 주장되고 있습니다. 반면,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예방의 필요성, 피해자의 응보감정 내지 응보적 정의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존치도 주장되고 있습니다.

○ 사형제를 대체할 방안으로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인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결정을 하였고(95헌바1, 2008헌가23), 현재도 헌법소원심판사건(2019헌바59)이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과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알코올 섭취 등을 핑계로 심신미약 감형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여론 또한 높습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음주'의 경우, 양형기준에서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심신미약'을 감경인자로 두고 있을 뿐, 주취상태를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는 범죄를 유발하는 면이 있어, 이러한 점을 예상하고도 음주에 나아간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에 의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 폭력, 성범죄 등 일부 범죄군에 대하여 알코올, 약물 등의 복용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 감경인자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지만, 형사정책적 관점과 형법상 책임원칙을 조화롭게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3. 피해자와 가해자, 지역공동체가 함께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의 개념이, 피해자가 형사 사법 절차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전통적 형사사법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복적 사법'이 우리 형사사법 제도에 필요하다고 보는지,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초점을 두고,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관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해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권리 신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범죄자에 대한 낙인 및 탈사회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죄로 손상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회복적 사법절차는 기존 형사사법절차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4.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보다 많은 액수의 배상을 명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억지하고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배상액 산정 기준이 자의적이거나 과도할 우려가 있고 소송이 남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도입에 있어 여러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입법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공적 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 여론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제기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인가?

○ '전략적 봉쇄소송'이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권리보호수단인 소송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공적의제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약이나 규제 없이 허용되거나 방치될 경우 민주주의의 핵심과 주권자의 정치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규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국회에서 제출된 바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여부, 규제의 내용과 범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률의 제·개정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이며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흉포화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법적 책임이 준엄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 다만,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가정과 학교의 보살핌과 교육을 통해 성인으로 성장해 나가므로 청소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성인과 동등하게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촉법 연령 하향 및 처벌 강화에 대한 소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을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활발히 기소가 되고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모욕죄의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이 파기되는 사례가 많은 등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과 모욕죄 처벌 조항에 대하여 개정 내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물,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하여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위헌확인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기각 5: 위헌 4)을 하였습니다(2017헌마1113 등).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판단한 바 있으며, 최근인 2022년 5월에도 6인의 재판관의 기각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습니다(2021헌바

341).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8.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혐오 표현이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혐오 표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더 많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혐오 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피해 소수자 집단을 사회에서 배제시키고 공적 토론의 장을 왜곡하는 해악을 야기하여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혐오 표현 자체를 범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독일에서도 혐오 표현을 범죄화하여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접근방식 외에 혐오 표현의 피해자가 민사적 또는 시정명령과 같이 행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접근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을 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와 그 상대방의 인격권 등 대립되는 이익들을 면밀히 형량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표현으로 야기되는 사회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9.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2014헌바68등).

○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재 2022헌가37).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심리 및 평의 중인 사건에 대하여 더 이상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 현재 우리 사회에 산적한 여러 인권 이슈 중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인권 문제에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어렵고, 또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어떠한 인권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인권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펴보겠습니다.

41. 검찰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규정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바 있고(헌재 2023. 3. 23. 2022헌라4), 동 법률의 내용 중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발인은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에 대하여 다수의 헌법소원심판이 계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2헌마1370 등).

○ 또한,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검찰청법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미 헌재에서 결정한 사안 내지 현재 심리 및 중인 사건 및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법안에 관하여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41항 답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 영장 없이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감청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위헌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따라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긴급통신제한조치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 즉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빼내어 감청대상자의 컴퓨터와 똑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지득하는 감청방법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범죄수사를 위해 패킷감청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패킷감청은 그 기술적 특성으로 수사기관이 허가받은 범위 이상의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통신 자료를 취득하게 됨에도, 현행법상 집행 과정이나 그 이후에 객관적인 감독·통제 수단이나 감청자료의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패킷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44.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헌 문란과 폭동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91조는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제2호)”라고 규정하고, 대법원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 다만, 이러한 내용이 관련된 헌법재판 사건들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고(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14,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형법 제87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현재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안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조치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1980. 5. 17. 당시의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의 폭동성 여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의 헌법질서 아래에서는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바 있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띠는 통치행위이므로 사법부가 그 요건의 구비 여부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왕조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사람도 국헌문란의 죄(내란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죄의 수단이 계엄이므로 대통령이 계엄선포를 수단으로 하여 국헌문란을 한 경우에 그 범죄의 성부를 논함에 있어서 계엄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

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일종의 협박 행위로서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당 내용이 설시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 계엄법 제2조에서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엄법 제2조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 후보자는 형식적 요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가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우리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은 계엄의 요건과 절차,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만큼(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히기 어려움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1.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 인정하나?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통치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고, 또한 해석·포섭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헌법 또는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도 고도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통치 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고, 또한 해석·포섭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고도의 통치행위가 사법적 심사대상이 된다면 처벌할 수 있나?

○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인지 및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고, 또한 해석·포섭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윤, 계엄사태의 경우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나?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라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인가?

○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을 존중하며, 다만, 대통령의 2024. 12. 3.자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들 및 관련 탄핵사건들(2024헌마1109, 2024헌마1110, 2024헌마1111, 2024헌마1131, 2024헌나6, 2024헌나7, 2024헌나8 등)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의견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된 사건과 관계된 의견에 해당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통치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대 헌법질서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아주 낡은 논리라는 반박도 있음. 이에 대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인가?

○ 대법원은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한다. 다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에 대하여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위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사법심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통치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정이 필요하고, 또한 해석·포섭상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공감한다면, 현재 헌법의 어떠한 측면, 어떤 의미가 제왕적 요소라고 생각하나?

○ 국정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또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가리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으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일치된 정의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행 헌법에서 어떠한 요소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표현되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관한 우려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현상은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구조나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치구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떠받치는 정치문화에서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중 어떠한 권한이 제왕적 대통령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상 통치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헌법 66조 1항은 대통령에 국민대표자의 지위를 부여했다. 대통령이 100% 국민 전체를 위한 국정을 하고 국민통합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헌법적 임무라고 본다. 그러나 많은 대통령들이 자신의 지지자, 진영에 기반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했던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한가?

○ 헌법 제61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국민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과거 대통령의 인사나 국정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대통령이 국민통합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에 있어, 과반수를 넘지 않아도 당선이 가능한 현행 단순다수대표제가 아닌 절대다수대표제가 헌법 취지에 맞다고 보여진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개헌 사항인가, 법률 개정 사안인가?

○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67조 제3항과 같은 예외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선을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선거에서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상대다수대표제는 단순성, 직관성, 효율성이라는 특징과 강점을 가지는 선거제도이나, 당선을 위한 하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절대다수대표제의 도입은 긍정적인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이 절대다수대표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것은 헌

법개정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우세한 견해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률을 통해 절대다수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 사안에 관하여 이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51조는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를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했으나, 1960년 유신헌법에서 동일 조항에 '국가의 원수' 지위를 부여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안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국가 원수'의 개념은 대통령이 타 헌법기관을 초월한 우월적 지위로 인식되도록 유도한다는 학계나 역대 개헌자문위의 의견이 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 헌법 제66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1항의 '국가의 원수'란 대외적으로는 국가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국민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대표할 자격을 가진 국가기관을 의미합니다.

○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가원수의 지위와 정부수반의 지위를 겸하도록 한 결과, 대통령이 권력분립원칙을 뛰어넘어 다른 헌법기관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외적으로 국가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에 대하여 국가원수가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는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님들과 국민이 지혜를 모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 개정에 관하여 이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과거에는 안보, 치안 유지나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국가의 중심 임무이던 시대였으나 현재는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임무가 된 시대이다. 국가의 규모, 역할이 커진 만큼 임무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생활기본권이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소득, 돌봄, 환경에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국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 다만,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급부확대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야기하므로, 사회적 기본권을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형성할 것인가는 국가정책, 재정상황,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부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들을 들어 현명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서 정책결정 또는 입법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헌법 91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설정되었으나, 실질적 기능을 못한다는 평가가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다양한 제정당 대표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에 협력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헌법 제91조 제1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헌법조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초당적 참여와 같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헌법은 법 위의 법으로서 기본법, 일반법, 상식법이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현행 법관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헌법 111조와 헌법재판소법 5조를 변경하는 데에 후보자의 의견은? (외국사례 추가)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고 하면서, 제1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관하여, 독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나, 프랑스 및 미국의 경우 법조인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전면적 법조 일원화로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로 법조계 전체 구성이 다양화되고, 그와 같이 다양화된 법조인들 중에서 헌법재판관이 배출된다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 재판관 자격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나 개헌 사항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4. 사법, 감사에 관련한 헌법기관의 장과 방송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정파에 따라 추천하는 일로 정치적 논쟁이 있다. 이를 탈피하여 수사·기소·감사와 방송언론 영역의 장을 임명하는데 그 결과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영)방송사 사장 등의 기관장 임명에 별도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적 추천기구를 두는 데에 후보자의 입장은 어떠한가?

○ 현재 검찰총장 임명절차에는 후보추천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검찰청법 제34조의2),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절차에도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존재합니다(대법원내규 제495호 헌법재판소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내규).

○ 나아가 대법원장과 국회 선출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방송사 사장 등의 임명절차에도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등의 추천 및 임명에 관하여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중지) 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후 기소 시 헌재 심판절차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하여 판단되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절차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질서의 통일성과 당사자의 신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심판절차의 정지를 재판부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탄핵심판절차가 반드시 정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려 정지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판절차의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절차가 필요한 점, 적법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보호도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해당 탄핵심판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만큼(2024헌나8),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하여 재판관 후보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현직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헌법재판 공백이 발생함. 헌법,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률을 개정하여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은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재판관 임기 만료 시에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자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 헌법기관의 직무 연속성의 면에서 필요한 방안일 수 있으나, 그 필요성 여부나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17.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가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대통령의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별하여 궐위된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현상유지일 필요는 없지만 사고인 경우에는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여 권한대행의 범위가 일괄적으로 확정될 수는 없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함,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권한대행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같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 재판관 임명절차에 따라 다르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같게 보아야 한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 행사의 적법 여부 내지 당부와 관련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을 법관 자격을 가진 자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관 업무 특성상 법률가의 업무 수행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시민 보편적 합의인 헌법에 대한 해석과 재판은 더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함. 해외 주요국은 헍법재판관 자격 규정이 부재하거나, 헌법 교수, 행정공무원 등도 헌법재판관 자격을 가지도록 규정함. 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5조는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고 하면서, 제1호는 “판사, 검사, 변호사”, 제2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관하여, 독일의 경우 법률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요구하나, 프랑스 및 미국의 경우 법조인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일본의 경우 판사, 검사, 변호사, 법률학교수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새로운 법조인 양성 시스템과 전면

적 법조 일원화로 다양한 배경과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로 법조계 전체 구성이 다양화되고, 그와 같이 다양화된 법조인들 중에서 헌법재판관이 배출된다면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관 자격에 관한 개헌의 필요성 여부나 개헌 사항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를 통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이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20. 2004년 행정수도 위헌 결정 관련하여 당시에는 '서울=수도'가 관습헌법이라고 결정, 관습헌법에 의해 국민 삶 영향받는 것이 우리 법체계상 가능한지? 후보자 의견은?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도이전은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 10. 21. 2004헌마554등). 이 결정에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관습헌법을 근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나, 위 결정에 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2004년과 2024년에 어느 정도로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가?

○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여 수도이전은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04. 10. 21. 2004헌마554등).

○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개정 사안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입장에서 개헌에 관하여 더 이상의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해외 사례 중 행정수도 옮기는데 헌법적 결정한 사례, 또는 수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

○ 터키, 브라질 같은 경우 수도를 이전하면서 헌법에 수도에 관하여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독일은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통일조약을 통해 베를린을 수도로 정한 뒤 헌법 개정 때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외에 중국, 러시아,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 헌법에 수도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